기술보증기금의 주요업무(1) -기술보증업무

I. 개요

- 존재이유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법 1 조)
 -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 &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1. 기술보증

- ✓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 ✓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따라서, 기술력 있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하여, 자금 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금 :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기술-중소 벤처기업의 담보 부족 등 해소
- →재창업 기회 등 제공
- 2. 중점지원대상 기업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1을 우선적으로 보증 지원

<u>대상</u>기업

- ① 벤처・이노비즈기업
- ② 업종²
- ③ 기술인증 획득기업
- ④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⑤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3. (참고)기보전담 영역 -신보와의 업무 구분

기보 전담보증 영역³ -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은 기보에서 전담하여 보증지원.

구 분

전담영역 운용

¹ 기술력 &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OR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² 주요업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미래성장유망산업/기술집약산업/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녹색성장산업/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³ 기보와 신보간 업무 중복 해소를 위한 협약(홈페이지)

기보 또는 신보의 보증거래가 없는 기업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기보만 거래중인 기업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기보와 신보에 동시 거래중인 기업	기보에서만 보증가능
신보만 거래중인 기업	신보와 계속거래 가능

2. 주요상품

- ✓ 기금 :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 정책기구 : 기금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별도 심사없이(기본요건 심사만 거쳐) 정책자금 지원

I. 창업, 준비 단계

1.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4

2. (참고)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

창업실패 부담 완화를 통한 모험형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창업보증제도

3. (참고)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4. (참고)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

이공계 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제조업 영위 기업
기록경달·뿌리장입	대표자가 만 40~59세 이하,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 뿌리산업 : 주조・금형・용접・열처리・표면처리・소성가공 등

5. 프론티어 벤처기업 보증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벤처기업 대상

 4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 구축하는 제도

지원대상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	
	금 보증 지원.	
	-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일반창업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지식재산권 사업화·신성장산업 창업 예정인 자	
	>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 활용 , 첨단・성장 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	
	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 창업 후 3년 이내인 venture
- 신성장산업 영위
- 기술사업평가등급이 높은 벤처

Ⅱ. 도약, 성장, 기타

1. Kibo-Star 벤처기업 보증

• 벤처기업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Hidden Champion 선정 및 육성 위한 보증제도

2.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기술·산업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 중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도
- 지원

보증연계투자 우선추천, V/C 투자유치 지원 상장 지원: 전문 심화컨설팅 무상지원 전담 코칭, 홍보지원 등

3. 기업인수보증

- 기업인수·합병(M&A)에서 소요 자금 보증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기술 사장 방지를 위한 제도

III. R&D 보증, IP 보증

1. 특허·지식재산(IP) 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특허기술의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로써 등록된 특허기술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술가치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

2. (참고)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

IV. 일자리, 혁신성장

1. 일자리창출 지원(굿잡보증)

고용없는 성장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 (굿잡보증)

대상기업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1 년전 대비 상시근로자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애인,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자금수혜

2. 4 차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산업의 성장속도 둔화
- 미래 주력산업인 신성장 분야 적극 지원
-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제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기업 육성 목적

3. (참고)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 양적 투입 위주 제조업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 제조업과 IT ·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기업 육성에 목적

4. (참고) 핀테크기업지원 우대보증

-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으로 금융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둔 제도
- 핀테크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서비스 및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
- 지급 결제, 모바일 송금, 크라우드 펀딩
-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